

## 직권조치결과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4년 03월 27일

을지로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권 *훈	권 *훈 1993-03-14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3길 (주교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3-27
한 *희	한 *희 1996-08-27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0길 (을지로4가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3-27